

## 우체국 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

### 제1조 【적용범위】

‘우체국 장병내일준비적금’(이하 ‘이 예금’ 이라 한다)의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‘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’, ‘적립식예금약관’, 조세특례제한법, 동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제2조 【예금종류】

이 예금은 적립식 예금이다.

### 제3조 【가입대상】

-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가입시점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의무경찰, 해양의무경찰, 의무소방원, 사회복지무요원, 대체복무요원에 한한다.
  1. 이 예금 신규일 기준으로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
  2. 가입대상임을 증빙하는 「장병내일준비적금」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 제출
- ② 이 예금은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.

### 제4조 【가입 및 해지】

이 예금의 가입 및 해지는 우체국 창구를 통하여 한다.

### 제5조 【가입기간】

- ① 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일 단위로 정할 수 있다.
-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은 고객의 전역(또는 소집해제)예정일로 한다.  
※ 대체복무요원의 최대 가입기간은 24개월로 함(만기해지 후 재가입 불가)
- ③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없다.

### 제6조 【저축방법】

- ① 이 예금은 자유적립식으로 한다.
- ② 이 예금은 가입 시 최저 1만원 이상, 2회차 이후 원 단위로 적립 가능하다.
- ③ 이 예금의 저축한도는 매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할 수 있다. 단, 「장병내일준비적금」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은행을 합산하여 고객의 최대 저축한도는 월 40만원이며, 동 저축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별 월 20만원까지 저축 가능하다.

### 제7조 【적용이율】

- ① 기본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epostbank.go.kr) 등에 게시된 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되, 이율이 변동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일자를 기준으로 변동된 이율을 적용한다.
- ② 우대이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 연 0.5%p를 제공한다.
  1. 「적금 자동이체 실적」 해당될 경우 : 연 0.2%p
  2. 「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」 해당될 경우 : 연 0.2%p
  3. 「우체국예금 첫 거래 고객」일 경우 : 연 0.1%p
- ③ 이 예금의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이율을 바꾼 때에는 그 바뀐 내용을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epostbank.go.kr)에 1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우체국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0조(약관변경) 절차를 갈음한다.

### 제8조 【이율적용방식】

-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기본이율에 만기 시 까지 확정된 우대이율을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며 이는 만기해지 계좌에 한하여 적용한다.
- ② 「적금 자동이체 실적」은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월 1만원 이상 자동이체 약정을 하고 자동이체 납입 횟수가 계약기간(가입일~만기일) 개월수의 50%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.
- ③ 「우체국 체크카드 이용실적」은 신규 가입일이 속한 월의 1일 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우체국 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월평균 5만원 (총 20만원)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.
  - ※ 체크카드 승인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(신용결제 제외)
- ④ 「우체국예금 첫 거래 고객」은 신규 가입일 현재 우체국예금을 처음 거래 하는 경우로 가입 시점에 전산으로 확인하여 자동 적용한다.

### 제9조 【이자계산】

이자계산은 매회 납입금의 일적수에 이율을 곱하고 365로 나누어 계산하되, 이자의 10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에 의하여 절사한다.

### 제10조 【이자지급방식】

- ① 이 예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한다.
- ② 이 예금의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(우체국 영업일이 아닌 경우 포함) 직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우체국 창구에서 해지 가능하며 약정 만기이율을 적용하되 일수에 따라 가감하여 이자를 지급한다.

### 제11조 【부가서비스】

- ① 이 예금 신규 가입 시 우체국보험의 「무배당 우체국예금저축보험 1종 (휴일재해보장형)」 상품에 자동 가입되는 ‘무료 보험서비스’를 신청할 수 있다.
  1. 보험가입 기간은 1년으로 이 예금 최초 1회 제공하며, 이 예금 해지 시에도 보험계약은 유지된다.
    - ※ 단, 이 예금을 가입일 당일 해지한 경우 보험계약은 청약철회 됨
  2. 보험담보위험, 보험금지급 등 보험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은 이 예금 가입일 당시 기준으로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월 3만원 이상 자동이체 약정 시 우체국쇼핑 할인쿠폰 서비스를 제공한다.

구 분	주요내용
쿠폰혜택	○ 우체국쇼핑 이용 시 3,000원 할인서비스 제공
제공시기	○ 이 예금 가입일 다음월 5영업일 이내에 발송
제공조건	○ 이 예금 가입월에 자동이체 약정(월 3만원 이상)을 하고 쿠폰 제공일 까지 적금 및 자동이체 약정 유지고객 대상
제공방법	○ 고객정보의 휴대폰 번호로 할인쿠폰 안내 메시지 (쿠폰번호) 발송
사용방법	○ 우체국쇼핑 ( <a href="http://mall.epost.go.kr">http://mall.epost.go.kr</a> ) → 할인쿠폰 사용등록 → 할인 쿠폰 번호 입력 (등록)
등록기한 사용기한	○ 등록기한 : 쿠폰 발송일 ~ 발송일 이후 6개월 이내 ○ 사용기한 : 쿠폰 등록일 ~ 등록일 이후 6개월 이내
유의사항	○ 우체국쇼핑 이용 시 인터넷 우체국 회원가입 필수 ○ 쿠폰은 1회 등록, 사용 가능하며 쿠폰 분할사용 및 재사용 불가 ○ 이 예금 중도해지 후 재 가입 시 부가서비스 제공 불가

- ③ 부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은 우체국 및 우체국과 제휴한 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그 변경내용은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([www.epostbank.go.kr](http://www.epostbank.go.kr))에 게시한다.

### 제12조 【중도해지】

중도해지이율은 신규 가입일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.

### 제13조 【만기 후 해지】

만기일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적용이율은 가입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만기 후 이율 방식을 적용한다.

### 제14조 【특별중도해지】

- ① 적금 만기 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한 경우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가입당시 기본이율을 적용한다.

- ② 특별한 사유라 함은 가입기간 중 예금주의 사망, 의병전역,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에 따라 적금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③ 특별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려는 예금주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와 함께 해당 사유발생 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체국 창구에 방문하여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.
  - 1. 사망 :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
  - 2. 의병전역 : 병적증명서(전역사유 '의병')
  - 3. 입원 : 입원 확인서(3개월 이상) 또는 진단서

**제15조 【분할해지】**

이 예금은 분할해지가 불가하다.

**제16조 【과세구분】**

- ①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. 다만, 관련 세법('조세특례제한법' 및 '농어촌특별세법')이 개정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.
-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된다.
  - 1. '조세특례제한법'에서 정하는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.
  - 2. 이 예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.

**제17조 【1% 이자지원금 지급】**

- ① '1% 이자지원금'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납입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기간 동안 연 1%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'1% 이자지원금'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1. 적금 만기해지
  - 2.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(소집해제일)의 일치
    - ※ 단, 적금 만기일 전에 전역하는 경우, 적금의 만기일을 전역일로 간주
  - 3. 만기 해지시 전역일(또는 소집해제일)이 기재된 확인서 원본 제출
    - ※ 확인서 : 전역증(군경력증명서), 병역증, 병적증명서, 대체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중 택1
- ③ 만기 해지 시 확인서를 미제출하여 '1% 이자지원금'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추후 우체국에 재청구할 수 없다.
- ④ '1% 이자지원금'은 장병 목돈마련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 지원금으로,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.
- ⑤ '1% 이자지원금'지급 시행일은 2021년 10월 14일이며, 시행일 이후 만기 도래하여 만기해지한 계좌에 한하여 적용된다.

### 제18조 【제한사항】

- ① 이 예금은 「장병내일준비적금」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을 고객으로부터 받아서 신규 시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이 예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 가능한 과세특례 전용상품으로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, 가입 및 추가 납입, 1% 이자지원금,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다.

### 제19조 【기타】

- ① 이 예금은 예금담보대월, 질권 설정이 불가하다.
- ② 이 예금은 양도, 승계, 분할해지, 자동만기해지가 불가하다.

### 제20조 【매칭지원금】

- ① 매칭지원금이란,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 지원금으로, 적금 '납입건 별 원금'(A)에 '우체국에서 정하는 이자소득'(B)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'1% 이자지원금'(C)을 합산한 원리금(A+B+C)에 관련 법령(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율)에서 정한 정부지원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- ② 매칭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 조건은 제17조(1% 이자지원금 지급)에서 규정한 지급 조건과 같다.
- ③ 매칭지원금은 우체국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달리, 만기해지 시 우체국에 제출한 희망 계좌로 국방부(국군재정관리단)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한다.
- ④ 매칭지원금은 정책 및 관련 법령 등 변경에 따라 시기별로 지원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. 지원금액 변경내용은 국방부 나라사랑포털 및 우체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병역법 시행령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- ⑤ 매칭지원금 지급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며, 시행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. 단, 이 적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 가능한 과세특례 전용 상품으로, 관련 세법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가입자의 경우 매칭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다.

## 부 칙

이 특약은 2018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특약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특약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특약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※ 이자율 적용 가입구간 변경에 따라 제7조 1항의 이자율 조건표(별지2) 변경됨.

부 칙

이 특약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특약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특약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